

# 『구미시 체육시설 관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』

## 검 토 보 고 서

### 1. 제 출 자 : 구 미 시 장

### 2. 제안이유

- 다자녀가정 및 한부모가족에 사용료 감면 혜택 추가를 통해 시민의 경제적 부담을 줄여 체육·여가 활동의 기회를 확대하고자 함.

### 3. 주요내용

- 다자녀가정 및 한부모가족에 대한 사용료 감면 내용 신설(안 별표3)
  - 주민등록상 주소지가 구미시로 되어 있고, 만 19세 미만인 자녀를 3인 이상 둔 가정
  - 「한부모가족지원법」에 따른 한부모가족

### 4. 참고사항

- 관계법령 : 「저출산·고령사회기본법」, 「구미시 인구정책 지원 조례」
- 예산조치 : 별도조치 필요 없음
- 합 의 : 감사담당관, 기획예산과와 합의되었음
- 기 타 : 해당사항 없음

## 5. 검토의견

### ○ 본 일부개정조례안은

- 다자녀가정 및 한부모가족에 대한 이용료 감면규정을 신설하여 체육시설 이용에 대한 시민들의 경제적 부담을 줄이고 체육·여가 활동 기회를 확대하고자 제출된 안임.

### ○ 검토 결과,

- 「구미시 인구정책 지원 조례」에 따라 인구 감소 추세에 대응하고 저출산 시대 출산, 양육 친화적 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인구정책의 일환으로 다자녀가정과 한부모가족에 대한 이용료 감면 혜택은 적절하다고 판단됨.
- 이용료 감면을 통해 다자녀가정의 양육부담을 덜고 여가활동 등에서 상대적으로 열악한 환경에 있는 한부모가족에게 체육·여가활동의 기회를 제공함으로써 시민들의 삶의 질 향상과 시설 이용 활성화에 기여할 것으로 사료됨.
- 그 밖에 기존 2시간 적용하던 이용료 산정기준을 1시간으로 변경한 위탁운영 체육시설 사용료 고시 내용을 조례에 반영하고 다른 법령에서 공공체육시설 사용에 대한 감면 요율을 규정하고 있는 사항을 구체적으로 명시한 것으로 별다른 문제점은 없음.